



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VII-02-D06-01
개정일자	2020.07.24.
제정일자	2002.07.01
담당부서	성희롱성폭력상담소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남보건대학교 구성원 간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성희롱·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현행 성희롱 관련법상 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’ ‘성적 언동 등으로’ ‘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’를 말한다.
- ②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‘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권리’, ‘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’를 침해하는 것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 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1.2.항의 성희롱, 성폭력은 교육, 업무,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,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.

제 3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동남보건대학교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.

제 4 조(피해자 중심의 원칙)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조사, 심의,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
제 5 조(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) ① 성희롱·성폭력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·성명·연령·직업·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성희롱·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(예방교육) ① 총장은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.

- ②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 및 직원은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본교 학칙적용을 받는 학생은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④ 교내 성희롱·성폭력상담소는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은 그 결과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.

제 2 장 성희롱 ·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

제 1 절 성희롱 · 성폭력상담소

제 7 조(성희롱 · 성폭력상담소 설치) 총장은 교내에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의 조사, 처리와 성희롱 ·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정책 수립 및 교육을 담당하는 성희롱 · 성폭력 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 8 조(상담소 구성) 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, 상담교수, 고충상담원을 둔다.

② 상담소장은 부교수이상 교수로, 상담소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며,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07.24.>

③ 상담교수는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상담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성희롱 · 성폭력상담소에 고충상담원을 둔다.

제 9 조(상담소 업무)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
- ②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조치
-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결과 보고
- ④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

제 2 절 성희롱 · 성폭력대책위원회

제 10 조(성희롱 · 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) 총장은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의 조사 · 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 ·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 11 조(대책위원회의 구성)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

② 학생처장, 상담소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수 3인(전임교원)과 직원 2인은 총장이 임명한다. 외부위원 2인은 총장이 위촉하며 필요시에 참석한다. 학생

위원 2인은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학생이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위원으로 선임한다.

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대책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대책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2조(대책위원회의 업무) 대책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조사·중재

②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

③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

제13조(대책위원회 회의)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소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,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장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

제14조(신고 등) ①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및 제3자도 상담소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상담소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담소 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소에 이첩하여야 한다.

③ 상담소는 신고를 받은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상담소장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총장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상담소에 접수되어 조정된 사건은 상담소장이 총장에게 보고하며,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은 성희롱·성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).

제15조(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심의·의결) 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대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소위원회는 그 결과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·의결한다.

제16조(징계 및 조치) ① 대책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② 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
1. 피해자의 보호 조치
2.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·배상 등 필요한 조치
3.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
4.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대책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, 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 요구

제17조(처리결과의 통지) 대책위원회는 사건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비밀유지의무)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규정) 이 규정은 「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 (1999.7.1)이후에 발생한 성희롱·성폭력사건 등 미 해결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(전면개정)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